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입주자 모집공고 (안)

시행·시공 (주)우성종합건설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03. (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남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남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주택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6개월 전매제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당첨자발표일(2020.07.21.)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주택법」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 청약자 [특별공급(기관추천 제외),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2019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2019.07.03.이전부터 계속)**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물론**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적용지역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gamman.smartcityview.com/)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남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야 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와 계약자 간의 최초 계약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체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7월 13일(월)	07월 14일(화)	07월 15일(수)	07월 21일(화)	08월 03일(월) ~ 08월 05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당사 견본주택 (부산시 남구 용호로 8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8.04.20.)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56세대(다자녀 특별공급 2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8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28세대(건설량의 15%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18세대(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 발표일[2020.07.21.]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고, 공급 금액(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구 분				61 TYPE	74 TYPE	84 TYPE	합계
아이맘 부산플랜 세대	다자녀			10	9	9	28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	6	6	6	18
			일반공급	0	0	0	0
	합계			16	15	15	46

- 「아이맘부산플랜」세대는 각 타입별로 위와 같이 배정되며, 기관추천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타입별 경쟁 발생 시 당첨자 발표일(2020.07.21.)에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해당 세대를 선정하며, 각 타입별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는 소득기준 우선공급 세대를 우선 선정하고, 미달되는 타입에 한해 일반공급 세대에 배정되며, 경쟁 발생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분양가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인하는 「아이맘부산플랜」 해당 세대 중 정당계약 기간 내에 계약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반공급 및 예비당첨자, 선착순 계약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는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의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총 건설량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m²이하 총 건설량의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공급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른 분양가 인하 적용세대는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한국감정원에서 진행되는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방문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과-37911호(2020.07.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7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2층 3개동 아파트 총224세대
[일반공급 146세대 특별공급 78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41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 양	계	
민영 주택	2020000778	01	61.3914	61	61.3914	22.3174	83.7088	39.3054	123.01482	35.3773	69	6	10	10	2	28	41
		02	69.5709	69	69.5709	24.2506	93.8215	44.5422	138.3637	40.0907	3	0	0	0	0	0	3
		03	74.1913	74	74.1913	26.3264	100.5177	47.5003	148.0180	42.7534	63	6	9	9	1	25	38
		04	77.7593	77	77.7593	26.4512	104.2105	49.7848	153.9953	44.8094	3	0	0	0	0	0	3
		05	83.0008	83	83.0008	28.4086	111.4094	53.1406	164.5500	47.8299	3	0	0	0	0	0	3
		06	84.4520	84	84.4520	29.6103	114.0623	54.0697	168.1320	48.6662	65	6	9	9	1	25	40
		07	91.4213	91	91.4213	30.6719	122.0932	58.5319	180.6251	52.6823	3	0	0	0	0	0	3
		08	93.8915	93	93.8915	31.8414	125.7329	60.1133	185.8462	54.1058	3	0	0	0	0	0	3
		09	102.7620	102	102.7620	34.2111	136.9731	65.7927	202.7658	59.2175	3	0	0	0	0	0	3
		10	106.8627	106	106.8627	40.8666	147.7293	68.4180	216.1473	61.5805	1	0	0	0	0	0	1
		11	109.2907	109	109.2907	41.7218	151.0125	69.9727	220.9852	62.9796	2	0	0	0	0	0	2
		12	131.3673	131	131.3673	47.8572	179.2245	84.1068	263.3313	75.7015	3	0	0	0	0	0	3
		13	143.0267	143A	143.0267	52.4428	195.4695	91.5718	287.0413	82.4203	1	0	0	0	0	0	1
		14	143.4078	143B	143.4078	52.4945	195.9023	91.8156	287.7179	82.6399	1	0	0	0	0	0	1

		15	147.5760	147	147.5760	53.8778	201.4538	94.4844	295.9382	85.0418	1	0	0	0	0	0	1
											224	18	28	28	4	78	146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61	74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2	2	2	6
	장기복무제대군인		0	0	0	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0	0
	중소기업근로자		0	0	0	
	장애인		4	4	4	1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0	9	9	2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8	7	7	22
		일반공급(25%)	2	2	2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1	1	4
합 계			28	25	25	7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동호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021.04.05	2021.08.05	2021.12.06	2022.04.05	2022.08.05	2022.12.05	
61	101동 1호 102동 3호 103동 3호	4~9층	18	114,632,000	207,368,000	0	322,000,000	10,000,000	2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96,600,000
		10~차상층	51	117,622,000	212,778,000	0	330,400,000	10,000,000	2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99,120,000
69	101동 301호 102동 303호 103동 303호	3층	3	123,354,000	223,146,000	0	346,500,000	10,000,000	2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103,950,000

74	101동 3호 102동 1호 103동 2호	4~9층	18	137,665,000	249,035,000	0	386,700,000	10,000,000	2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116,010,000
		10~차상층	45	141,261,000	255,539,000	0	396,800,000	10,000,000	29,680,000	39,680,000	39,680,000	39,680,000	39,680,000	39,680,000	39,680,000	119,040,000
77	101동 201호 102동 203호 103동 203호	2층	3	128,445,000	232,355,000	0	360,800,000	10,000,000	26,080,000	36,080,000	36,080,000	36,080,000	36,080,000	36,080,000	36,080,000	108,240,000
83	101동 303호 102동 301호 103동 302호	3층	3	146,494,000	265,006,000	0	411,500,000	10,000,000	3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123,450,000
84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1호	4~9층	18	156,213,000	282,587,000	0	438,800,000	10,000,000	3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131,640,000
		10~차상층	47	160,307,000	289,993,000	0	450,300,000	10,000,000	3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135,090,000
91	101동 203호 102동 201호 103동 202호	2층	3	123,288,700	272,283,000	27,228,300	422,800,000	10,000,000	3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126,840,000
93	101동 302호 102동 302호 103동 301호	3층	3	135,419,700	299,073,000	29,907,300	464,400,000	10,000,000	36,44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139,320,000
102	101동 202호 102동 202호 103동 201호	2층	3	138,306,100	305,449,000	30,544,900	474,300,000	10,000,000	3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142,290,000
106	103동 2703호	최상층	1	159,213,600	351,624,000	35,162,400	546,000,000	20,000,000	3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109	101동 2301호 102동 3103호	최상층	2	162,772,000	359,480,000	35,948,000	558,200,000	20,000,000	35,820,000	55,820,000	55,820,000	55,820,000	55,820,000	55,820,000	55,820,000	167,460,000
131	101동 2603호 102동 3101호 103동 1802호	최상층	3	193,185,000	426,650,000	42,665,000	662,500,000	20,000,000	46,250,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198,750,000
143A	101동 2502호	최상층	1	210,681,000	465,290,000	46,529,000	722,500,000	30,000,000	4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72,250,000	216,750,000
143B	103동 2501호	최상층	1	211,148,000	466,320,000	46,632,000	724,100,000	30,000,000	4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217,230,000
147	102동 2702호	최상층	1	217,125,800	479,522,000	47,952,200	744,600,000	30,000,000	4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223,38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등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외국인 토지법」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 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제2호의2(국가유공자), 제3호(국가보훈대상자), 제4호(5·18민주유공자),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제6호(참전유공자), 제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 공급세대수 : 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신청기관 ①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 부산지방보훈청복지과 ② 장애인 : 부산시청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및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 요건 :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공급세대수 : 총공급 세대수의 15% 이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순으로 공급함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 요건 :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공급세대수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5% 이내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1순위 요건 충족.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공급세대수 : 총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을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임신 또는 자녀를 입양한 부부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3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청약 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되므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로 본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85㎡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주택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 바람.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85㎡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해당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주택형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2007.9.1 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주택공급신청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청약신청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7.13. (월) (청약Home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청약HOME(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80)
일반공급	1순위	2020.07.14. (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청약HOME(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2순위	2020.07.15. (수)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2019.07.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임.)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비사업자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자녀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신청시 추가사항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울산,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남천 우성스마트시티·뷰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table>
<tr><th>구 분</th><th>신청대상자</th><th>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th><th>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th><th>계약체결</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td><td rowspan="3">• 일시 : 2020.07.21. (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 rowspan="3">• 일시 : 2020.07.22. (수) ~ 2020.07.26. (일)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td><td rowspan="3">• 일시 : 2020.08.03. (월)~2020.08.05. (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감만 우성스마트시티 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80)</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1순위</td></tr>
<tr><td>2순위</td></tr>
</table>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사전 검수 기간 별도 안내 예정)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임.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7.21. (화) ~ 2020.07.30. (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7.21.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 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 일반 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 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V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8.03. (월) ~ 2020.08.05(수) 3일간, 10:00 ~ 16:00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80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BNK부산은행	113-2013-6927-06	㈜우성종합건설 정한식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포함)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접수 불가(대리인 지정 발급시 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O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품목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포함)	
		O	출입국사실증명원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2019.07.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O	직계존 비속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복무확인서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O	인감도장(계약자)		
		O	위임장(계약자)		
		O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한다),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착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본 아파트「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0.07.21.)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일정은 추후 통보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계약금 10%를 납입한 계약자에 한해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함.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무이자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무이자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연체 이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Ⅶ 추가선택품목 계약

■ 공동주택 기본선택 품목 (마이너스옵션)

(1) 공통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은「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의거 소방, 기초마감, 전기, 설비,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설치 위치는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에 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복도, 침실, 드레스룸 <타일, 디딤판>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테라스 바닥(2층, 3층)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벽,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소,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방수(바닥, 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전기오븐, 렌지후드	설비배관, 전기. 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디지털도어록, 각 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3)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61	69	74	77	83	84	91	93	102	106	109	131	143A	143B	147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0,843,000	23,361,000	25,028,000	25,948,000	27,740,000	28,401,000	31,280,000	32,212,000	35,092,000	37,272,000	38,100,000	44,707,000	48,759,000	48,867,000	50,252,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배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공급금액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잔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재수급,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하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 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61	10,200,000	1,020,000	9,180,000
69	10,300,000	1,030,000	9,270,000

74	10,400,000	1,040,000	9,360,000
77	8,600,000	860,000	7,740,000
83	10,500,000	1,050,000	9,450,000
84	11,100,000	1,110,000	9,990,000
91	8,700,000	870,000	7,830,000
93	11,300,000	1,130,000	10,170,000
102	9,300,000	930,000	8,370,000
106	14,400,000	1,440,000	12,960,000
109	12,600,000	1,260,000	11,340,000
131	15,800,000	1,580,000	14,220,000
143A	16,300,000	1,630,000	14,670,000
143B	14,200,000	1,420,000	12,780,000
147	15,500,000	1,550,000	13,950,000

(2)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BNK부산은행	113-2013-6926-01	㈜우성종합건설 정한식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 '102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의 사용관리상 하자 및 임의 개보수를 제외한 시공상 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 발코니 외부창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 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 및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상하부 세대 포함)가 기본형(비 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가구길이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확장형 세대와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확장 시 유상 선택 옵션)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위치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비고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61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천정형에어컨 LG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69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74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77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83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84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91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93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102	선택 1	2대	안방+거실	3,500,000원	350,000원	3,150,000원	
	선택 2	4대	안방+거실+침실1+침실2	6,000,000원	600,000원	5,400,000원	
106	선택 1	3대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4,750,000원	475,000원	4,275,000원	
	선택 2	5대	(최상층 상부층)거실+침실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7,900,000원	790,000원	7,110,000원	
109	선택 1	3대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4,750,000원	475,000원	4,275,000원	
	선택 2	5대	(최상층 상부층)거실+침실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7,900,000원	790,000원	`7,110,000원	
131	선택 1	3대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4,750,000원	475,000원	4,275,000원	
	선택 2	6대	(최상층 상부층)거실+침실+침실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9,300,000원	930,000원	8,370,000원	
143A	선택 1	3대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4,750,000원	475,000원	4,275,000원	
	선택 2	6대	(최상층 상부층)거실+침실+침실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9,300,000원	930,000원	8,370,000원	
143B	선택 1	3대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4,750,000원	475,000원	4,275,000원	
	선택 2	6대	(최상층 상부층)거실+침실+침실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9,300,000원	930,000원	8,370,000원	
147	선택 1	3대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4,750,000원	475,000원	4,275,000원	
	선택 2	6대	(최상층 상부층)거실+침실+침실 (최상층 하부층)안방+거실+침실	9,300,000원	930,000원	8,370,000원	

- 상기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안방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2) 빌트인 가전 (확장 시 유상 선택 옵션)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비고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빌트인 냉장고(홈바형)	S711S124B	6,050,000	605,000	5,445,000	LG전자
전기레인지(인덕션1구+하이라이트2구)	BEH3GTBI	770,000	77,000	693,000	

(3) 추가 선택 옵션 납부계좌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 '102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옵션품목	BNK부산은행	113-2013-6926-01	㈜우성종합건설 정한식

(4) 추가 선택 옵션 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 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추가 선택 품목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옵션품목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Ⅷ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3년 04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이 부과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02동 지상 1층), 어린이놀이터 (단지 남서쪽), 경로당(101동 2,3호라인 앞 지상1층 건물), 주민운동시설(102동 지하 1층)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함.
-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0년 05월 27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모형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주변 건물 등은 실제와 다소 상이하며, 또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74타입 유니트, 61타입, 84타입의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 건립(설치)세대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난간, 방음벽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위탁 주택관리업자 등에서 계약 및 입주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초등학생의 통학교는 동천초등학교, 중학생은 감만중, 동항중, 석포여중으로 배치가능하나, 인근 지역의 다른 주택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배치 여건 등이 변경될수 있어 학생 배치를 재검토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르며, 학교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주변으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각종 시설 도로 및 현황(부두 및 항만시설, 물류창고, 공장, 기타 건물, 도로(진입로), 전신주, 옹벽, 오우수관로 등)으로 인해 단지 및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일조/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시행자, 시공사,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연단차 및 옹벽구간 시공으로 저층부의 경우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모형, 카탈로그, 각종광고지)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도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속동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 공급 당시의 명칭

		과 상이할 수 있음.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샘플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한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및 부대편의 시설, 문주, 미술품 및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	공통사항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인접한 도로와의 높이 차이에 의해 기존 설치된 옹벽이 존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저층부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옹벽 및 휀스의 재질 및 디자인, 조경석 설치계획 등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와 공용배기팬(주방배기) 및 E/V 기계실에 근접해 있어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 등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바닥면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출입구 및 2~3층 세대 테라스 상부의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저층부 세대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총 1개소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램프가 위치한 101동 및 인접한 102동의 저층세대는 차량 진출입시의 알림작동음 및 주행소음과 사인물 및 차량 라이트 등으로 인한 야간 빛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차 접근 및 에어매트 설치구간 확보를 위해 동 전면의 일부 녹지구간에는 교목식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보행자 주출입구~주상가 앞 보도 부분의 소유권은 입주민에게 있고, 입주민이 주 사용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차후 보도 관리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등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임.
		• 당 공동주택은 기준층 일반형과 저층부 발코니 및 테라스, 최상층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층별 외관 및 실사용 면적이 각각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계실 전기실 등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출입구 및 저층부 외벽마감은 지정석재 및 일부 뿜칠로 마감될 예정(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중 변경될 수 있음.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프레임 및 실외기그릴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각종 외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102동 옥상에는 소방용 물탱크가 설치됨.
		• 101동과 102동의 대각선 방향의 동간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간거리,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 단지내 보행자 출입구 측 101동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상가 이용을 위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며, 냉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조명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은 대지의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정리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에 배정된 주차대수에 해당되는 주차는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휴게소, 부대복리시설,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 3개소가 설치되고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로 분리수거장과의 거리는 상이함.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 시설물 (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시 단지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조경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

	문주/경비실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게이트형 문주는 주출입구(차량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입주자 편의를 위한 통합경비실은 101동 앞 차량출입구에 총 1개소 설치예정이며, 보행자 출입구에는 별도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음.
		• 지상에 경비실 총1개소 설치 예정이며, 실 시공시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음.
	시설물	•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동별로 상이하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될 예정(개소, 위치 및 규격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일부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동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함.
		• 각 동 지하1층에 제연휀(제연휀룸실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각 동별 지하2층에 우수저류조가 설치되고 102동의 지하2층은 소방수조, 지하1층은 전기실, 발전기실,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내 경관 사인몰, 커뮤니티 설치 시설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주차장	• 당 단지에는 총 1개소의 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램프가 위치한 101동 및 102동의 저층세대는 차량 진출입시의 알림 작동음 및 주행소음, 조망 등 환경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시 차량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 진입차로 유효폭 7.0m,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함.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지형적 여건상 층마다 이용불가능한 동이 발생할 수 있어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부 결로수를 위한 공간이며 상시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므로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 특성상 밀폐된 공간으로 날씨 및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RY AREA),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 미술장식품, 조경시설물,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이 지상에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과 미관, 소음, 진동, 매연 등의 환경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 천정 및 벽은 각종 배선, 배관 및 환기시설, 조명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빗물 등을 막기 위한 지붕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휀)가 노출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은 101동 2,3호 라인 앞 지상1층 건물, 관리사무소는 102동 지상1층, 주민운동시설은 102동 지하1층에 설치되며, 해당 공간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경우 101동 2,3호 라인앞에 위치하고 있어 저층세대의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및 102동과 103동 사이에 위치한 중앙광장 및 주민운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각종 집기류 제공없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마감재는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구획을 위해 조경석 또는 경계석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평면, 입면, 단면,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유리사양, 마감재,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급시설	• 대지 내 101동 인근에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설치 될 예정이며, 위치와 크기, 형태는 관할 도시가스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되며, 저압공급 시에는 정압실이 미설치 될 수도 있음.
		• 지하1층, 지하2층에 물탱크,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공통사항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외부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 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실외기는 별도의 실외기 실이 설치되나,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비 확장 세대의 경우 실외기 실에 별도의 방화문이 설치 됨.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1~3층) 세탁실 발코니 입상배관이 두개 이상 추가 시공됨. (저층부용 배관, 고층부용 배관 및 통기관)
		• 테라스 바닥은 타일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공간에는 우수 및 오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진입을 위해 외부창호에는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에 난간이 설치됨.
		• 난간대 형태, 재질, 시공방법, 낙하물 방지용 처마구조물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인도하는 테라스 건축 기본마감(방수, 콘크리트)외에 추가적인 시공(데크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는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함.
		• 동·호별로 테라스 형태 및 면적이 상이하오며, 배치에 따라 테라스 면적이 가감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주방가구보다 전면이 돌출 될 수 있으며, 배치가 불가할 수도 있음.
		• 현관에 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최상층의 상부층 난방 분배기는 드레스룸 또는 침실에 설치되고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 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기기(월패드 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거실과 안방 벽면만 설치되며, 옵션 선택으로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될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안방용 에어컨 냉매박스 내부에는 냉매배관 및 벽걸이용 콘센트(1구형)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카바 없이 도배로 마감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거실 아트-월 벽면 맞은편에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E/V와 벽이 간섭되는 세대는 E/V 소음이 일부 들릴 수 있음.
	창호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공급안내문, 카탈로그를 참고)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세대 외의 타입은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해야 함.
	마감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미사용시 해당없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미 사용시 해당 없음)
		• 인조강화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선반,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본 공사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비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옆 세대(발코니확장)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의 면적의 감소 및 일부벽체가 돌출될 수 있음.

		• 거실 우물 천장은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 주택	공통사항	• 견본주택은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니트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표시된 온도 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프레임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 (주방, 전자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공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주방의 크기 또는 주방가구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 류, 세대 내 타일 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적용여부	내용
고기밀 창호	적용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고효율기자재	적용	•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 적용
조명기구	적용	•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소방, 통신	전기
회 사 명	㈜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정엔지니어링	대한이씨엠(주)
감리금액	764,494,390원	38,500,000원	22,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2,865,250,000	제 02312020-101-00006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시행사 · 시공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 시공사	(주)우성종합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0, 2층(회동동)	180111-0700286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80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gamman.smartcityview.com/
■ 분양문의 : 051-751-1002
※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